구리시 공고 제 2024 - 1244호

주정차금지구역 단속(강화)에 따른 행정예고

원활한 교통소통 및 올바른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주정차금지구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함에 있어,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합니다.

2024, 07, 22,

구 리 시



- 1. 취지 및 목적 : 주정차금지구역 단속(강화)에 따른 행정예고
- 2. 관련근거: 행정절차법 제46조(행정예고)
- 3. 행정예고 기간 : 2024. 07. 22. ~ 08. 11. (21일간)
- 4. 행정예고 내용

가. 내 용: 제5공영 꽃길 노상주차장 폐지(예정)에 따른 주정차금지구역 단속(강화)

나. 시행기관 : 경기도 구리시

다. 주정차금지구역 : 기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양방향 약 330m 미터 구간

※ 세부장소 [붙임1] 참조

라. 불법주정차 단속(강화) 일시 : 2024. 08. 12.(월) 부터

※ 현재 주정차 금지구역이며, 제5공영 꽃길 노상주차장 폐지(예정)에 따라 해당 구간에 불법 주정차 시 고정형 CCTV 및 이동형 단속 차량으로 단속.

마. 공고기간 : 2024. 07. 22. ~ 08. 11. (21일간)

바. 공고방법 : 구리시청 홈페이지(http://www.guri.go.kr)

5. 의견제출

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(붙임 2)를 구리시청 교통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제출기간 : 2024. 07. 22. ~ 08. 11. (21일간)
- 나. 제 출 처 : 구리시청 별관 교통행정과 교통지도팀(구리시 아차산로 439)
- 다. 제출방법 : 직접 방문, 우편 또는 팩스(031-550-2098)
- 라. 의견서 기재사항
 - 의견제출자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 -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[주정차금지구역 신규 지정(단속실시) 및 해제에 대한 의견]
- 마. 기타사항 :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
- ※ 기타 문의사항은 구리시청 교통행정과(031-550-2764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붙임 1. 위치도 1부.
 - 2. 의견제출서 1부. 끝.

【붙임 1】

주정차금지구역 단속(강화) 장소

연번	구 역	단속 구간	비고
1	수택동 369 (제5공영 꽃길 노상주차장 폐지 예정 구역 포함한 전체 도로)	양방향 330미터	불법 주정차 단속

- 주정차금지구역 단속 위치도 -



【붙임 2】

		의 2	년 제	출	서					
사 업 명	명 주정차금지구역 단속(강화)에 따른 행정예고									
의견 제출자	성 명 (개인/단체)									
러딘 세골시 	주 소				전호	하번호				
검토의견 (의견제출내용)										
주정차금지구역 단속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										
		000413	OI	c	DI.					
		2024년	월	Ç	<u>=</u>					
			제 출 자			(서명	또는 인)			
			711 E 71			(/110	 -/			
구리시장 귀하										
, ,	, ,									